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과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등 2개 유형의 전기신사업에 대해 재생에너지 생산 전기를 사용할 경우 전력시장 외 거래 허용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통합발전소사업 에너지자원의 세부범위를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통합발전소사업 에너지자원 세부 범위 규정(안 제1조의4)

나. 재생에너지발전설비 연계방식, 재생에너지의 허용범위 등 개정법률 위임사항 구체화(안 제7조의4, 제19조)

다. 전기공급 거부 및 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에 법 개정으로 전기신사업에 포함된 통합발전소사업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추가(안 제5조의5, [별표 1])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4(통합발전소사업의 에너지자원) 법 제2조제12의1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에너지자원을 말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
2. 전기저장장치
3. 「전기사업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수요관리 사업에 이용되는 수요반응자원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집단 에너지사업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5.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6.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다목의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제5조의5제1호의2가목 중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을 “소규모전력중개사업 및 통합발전소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16조의5제2항”

을 “법 제16조의5제3항”으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로 한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재생에너지의 이용) 법 제16조의5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에 공급하는 경우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자동차충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9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등록기준		
	인력	시설	자본금
전기자동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정보	「전기용품 및	해당없음

충전사업	통신·전자·기계·건축·토목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 1명 이상을 둘 것. 다만, 법 제7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임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보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둔 경우에는 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인증표시등을 받은 콘센트(전기차 충전에 사용된 전력량의 계량 및 요금부과 기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확인표시등을 받은 전기차 충전기를 갖추는 것	
소규모 전력중개 사업 통합 발전소 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전자·기계·건축·토목·에너지·기상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 2명 이상을 둘 것. 이 경우 전기 분야의 기사는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없음	해당없음
재생에너지전 기공급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전자·기계·건축·토목·에너지·기상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 2명 이상을 둘 것.	해당없음	해당없음
재생에너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정보	「전기용품 및	해당없음

전기저장 판매사업	통신·전자·기계·건축·토목·에너지 ·기상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을 둘 것. 이 경우 전기 분야의 기사는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제9조 에 따른 안전인 증표시등을 받 은 전기저장장 치를 갖출 것	
--------------	---	--	--

부 칙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조의4(통합발전소사업의 에너지자원) 법 제2조제12의1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에너지 자원을 말한다.</u> <u>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발전 설비</u> <u>2. 전기저장장치</u> <u>3. 「전기사업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수요관리 사업에 이용되는 수요반응자원</u> <u>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에 이용되는 발전설비</u> <u>5.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에 이용되는 발전설비</u> <u>6.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다목의 중 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에 이용</u>

	되는 발전설비
제5조의5(전기공급의 거부 사유)	제5조의5(전기공급의 거부 사유)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전기사용자가 다음 각 목의 약관이나 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전기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의2. ----- ----- -----
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u>소규모전력중개사업</u> 은 제외한다) 약관	가. ----- ----- <u>소규모전력중개사업 및 통합발전소사업</u> -----
나.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라 <u>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u> 와 전기사용자 간에 체결한 전기공급 계약	나. 법 제16조의5제3항----- - <u>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u> -----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2.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가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 <u>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u> 의 정당한 조건에 따르지 않고 다른 방	2. ----- ----- ----- <u>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u> -----

법으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2의2. ~ 8. (생략)

<신설>

제19조(전력거래)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5. (생략)

<신설>

2의2. ~ 8. (현행과 같음)

제7조의4(재생에너지의 이용) 법 제16조의5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에 공급하는 경우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자동차충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9조(전력거래)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② ~ ⑦ (생 략)	<u>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u> <u>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u> <u>자 또는 전기자동차충전사업</u> <u>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전</u> <u>력을 거래하는 경우</u> ② ~ ⑦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연 락 처	(044) 203 - 3916